

공 고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공고 제 2016 - 11호

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」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6년 8월 24일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

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정이유

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하여 방범대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방범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(안 제1 ~ 2조)

나. 자율방범대의 조직구성 및 임무, 활동범위 규정(안 제3 ~ 5조)

다. 자율방범대 설립·등록 신고 방법 규정(안 제6조)

라. 경비의 지원범위 및 지도·감독 근거 마련(안 제6조, 안 9조)

마. 자율방범대연합회 설립(안 제8조)

바. 교육, 표창 및 지원금 신청에 관한 준용 규정 마련(안 제10 ~ 12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**2016년 8월 29일까지**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주소,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전화번호 등

다. 보내실 곳 :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 185(등촌2동 512-1) 강서구의회
(전화 : 2600-1807, 팩스 : 2600-1840)

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“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율방범대”(이하 “자율방범대”라 한다)란 각 동에서 방범의식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.

제3조(조직 및 구성) ① 자율방범대는 행정동 단위로 1개 조직을 편성·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거리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편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자율방범대는 대장·부대장·총무 및 대원(이하“자율방범대원”이라 한다)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.

③ 동별 자율방범대원의 주거지 및 사업장 소재지가 소속 자율방범대의 신고지에 해당됨을 원칙으로 하되,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

제4조(임무) ①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취약지역 범죤 예방·순찰 및 범죤 신고
2. 청소년 선도 및 미아·기아·가출인 보호 활동
3.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
4.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
5. 그 밖에 구민 보호를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

② 자율방범대는 제1항에 명시된 활동을 실시한 후 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, 그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
제5조(활동범위) 각 자율방법대의 활동범위는 해당 행정동의 관할구역으로 한다.

제6조(신고 등) ① 자율방법대를 신설·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자율방법대 설립·등록 신고서(이하 “신고서”라 한다)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적합성 및 사실 여부 등을 확인·검토 한 후 15일 이내에 자율방법대 설립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

③ 자율방법대의 대표자는 자율방법대가 해산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

④ 구청장은 자율방법대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
제7조(경비 지원 등) ① 구청장은 자율방법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복장 및 장비 구입비
2. 방법초소의 설치 및 운영비
3. 보험료, 유류비 등 방법순찰 차량유지 경비
4. 야간근무 활동을 위한 식비
5. 상해보험 가입비
6. 제10조에 따른 범죄예방 및 치안교육 경비
7.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방법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, 자율방법대원 수와 전년도 활동실적, 제9조에 따른 지도·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가감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

1. 3개월 이상 자율방법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
2.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

3. 제9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

4.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

제8조(자율방범대연합회) ①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율방범연합회(이하 “연합회”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합회 설립·등록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연합회 설립·등록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적합성 및 사실 여부 등을 확인·검토한 후 15일 이내에 연합회 설립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

④ 연합회의 조직·운영 및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9조(지도 및 감독) ① 구청장은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방법일지 작성 및 활동실적을 반기 1회 이상 지도·점검 하여야 한다.

제10조(교육) 구청장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자율방범대원에 대하여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11조(포상) 구청장은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방범대원 및 모범대원에 대하여 『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민상 조례』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.

제12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 절차에 관한 사항은 『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』에 따른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자율방범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는 이 조례에 따라 등록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
()자율방법대 근무조 편성표

구 분	근무조장 (휴대전화)	근 무 조 원	비 고
제1근무조			
제2근무조			
제3근무조			
제4근무조			
제5근무조			
제6근무조			

[별지 제2호 서식]

() 자율방범대 설립 등록증				
설 립 자	① 성 명	한 글		② 생년월일
		한 자		
	③ 주 소			
신 청 내 용	④ 명 칭			
	⑤ 목 적			
	⑥ 초 소 위 치	(연락처 :)		
	⑦ 총 인 원			
	⑧ 시 설 · 장 비			
	⑨ 설 립 연 월 일		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제2항에 따라 자율방범대 신고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-top: 20px;"> 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-top: 20px; font-weight: bold; font-size: 1.2em;">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</p>				

관련 법령

【지방자치법】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